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3월 30일 안재홍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18 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제정이유

2005. 1. 27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되었고, 2005. 8. 17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 가. 자연재해에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및 사업시행자의 재해저감계획 등 사전에 검토할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공무원과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위원회의 회의개최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전체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서면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라. 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위원장에게 검토요청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하여 검토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안 제9조).
- 마.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를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거나 관계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협조요청 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 바.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협의를 할 의무를 가지며, 용역 등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대상사업의 검토협의를 참여할 수 없도록 정함 (안 제12조).

III. 검토의견

1. 조례 제정 배경

○ 2005년 1월 27일 전문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을 보면,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하위법규에 그 제정권을 위임한 것이며, 또한 이 법에서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미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2006년 3월 5일 구청장에게 공문으로 조회한 바, 동월 28일 1차의견이 제출되었

고, 4월 5일 추가의견이 각각 제출되어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 수정·보완하여 상위법령의 위임된 범위안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문 배열은 기능(안 제2조), 검토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위원회의 회의(안 제7조), 검토협의 요청(안 제9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등(안 제12조)을 포함한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2006년 3월 24일 서울시로부터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조례제정 업무에 참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 4월 1일 현재 자치구별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용산구를 비롯한 10개구가 이미 2006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동 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이미 입안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조문내용의 적절성, 타당성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항)

○ 안 제4조제1항의 규정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검토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라고 정하였고, 동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정하였으며, (… 이하 생략) 동조 제3항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보면, 검토사항이 도시관리국 등 타국 소관도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격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국장급임을 감안하면 이 조례안과 같이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격상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항)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조례를 살펴보면,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종로구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서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전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안건을 좀더 심도 있게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몇 개 분야별로 분담·심의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과 같이 검토협의 할 사안을 감안하여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적절히 운영한다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셋째, 개별법령상 검토협의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와 그 협의 시기는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토협의 대상과 관련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도시관리계획 입안사무 일부에 관한 사항, ②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등이 검토협의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사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비추워 볼 때, 검토협의 대상사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IV. 관계법규 및 참고자료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 자치구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 현황
-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제출 공문 사본

<표 1>

자치구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현황

2007. 4. 1 현재

구 별	조 례 명	제정일자
용 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2006.11.10
중 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2006.12.26
성 북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2006.12.29
도 봉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2006.8.10
서대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2006.12.29
마 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2006.11.30
양 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2006.11.20
금 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2006.12.29
영등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2006.10.4
관 악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2006.11.20